



의안번호	제 2008 - 9 호
의 결 연 월 일	2008. 5. 27. (제8차 회의)

의  
결  
안  
건

전문가 토론회 개최계획안  
확정의 건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 1. 의결주문

「전문가 토론회 개최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에 대한 위원회 심의·의결을 앞두고 양형에 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자 양형위원회규칙 제11조에 근거하여 전문가 토론회 개최계획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계획안」을 의결하여 운영지원단으로 하여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별지 설명자료와 같음





# 전문가 토론회 개최계획안

## I. 목적

-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에 대하여 양형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 폭넓은 참고자료를 제공함
- 양형기준 설정 초기 단계부터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양형기준과 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함

## II. 토론회 개요

### 1. 명칭 · 주최

- 명칭 :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
- 주최 : 양형위원회

### 2. 일시 · 장소

- 일시 : 2008. 6. 16.(월) 14:00 ~ 18:00
- 장소 : 대법원 4층 401호 대회의실

## III. 토론회 참석자

### 1. 주제발표자

- 손철우 전문위원

- 이주형 전문위원
- 이호중 전문위원(가나다 순)

## 2. 지정토론자

- 양형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직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정함
- 지정토론자의 수 : 5 ~ 8인

## IV. 토론회 일정

- 개회 선언
- 주제발표
- 지정토론
- 자유토론 및 방청객 질의
- 폐회

## V. 토론 주제

-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에 관한 주요 쟁점
  - 하나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범위
  - 개별 양형인자와 양형의 상관관계 반영방식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선정 원칙